

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번 호	21 - 116
---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마포 여성센터의 운영을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7조

○ 필요성 : 여성 권리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요구가 커져가는 흐름에 따라 여성·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고,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 구축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(가칭)	소재지	규모	개관예정
마포구 여성센터	대흥로 122	624.2m ²	'22.6.
위치도			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321,000천원

(단위:천 원)

구 분	합 계	인건비	운영비		사업비
			일반운영비	신규물품 취득비	
총 계	321,000	150,000	32,000	94,000	45,000

아. 산출근거

구 분	금액 (천원)	산 출 근 거
인건비	1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설장 3급 15호봉 기준 48,000천원· 직원 5급 10호봉 기준 34,000천원*3명
사업비	4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성평등 도서관 운영 사업 10,000천원·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10,000천원·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마을 활동가 양성 사업 10,000천원· 주민 참여 프로그램 15,000천원
운영비	126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물품취득비 94,000천원 (업무용집기류, 공유ZONE, 다목적실 물품구입비 등),· 일반운영비 32,000천원(건물유지보수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

마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조례 제47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여성정책 분야 전문성과 여성센터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여성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성 평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7조

나. 기타사항

○ 주요진행경과

- 미포여성네트워크 중심으로 여성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: ‘19.2. ~ ‘20.5.
- (가칭)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 : 여성가족과-10649(‘19.11.14.)
- 마포구 여성센터 치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 마포1번가 연구용역 실시 : ‘20.5.~12.
-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실행단 운영 : ‘21.1. ~

○ 추진일정안

-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: ‘22. 3. ~ ‘22. 4.
-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: ‘22. 1. ~ ‘22. 6.
- 여성센터 개관 : ‘22. 6.

<양성평등기본법>

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>

제31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

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9.24.>

- 제47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